재산상속의 포기와 사망 보험금

최은순/변호사 www.womenlaw.co.kr

갑순이의 오빠부부가 최근 갑자기 교통사고로 차례로 사망(올케사망일은 2001. 5. 30. 오빠사망일은 그 다음 날인 5. 31.)하여 이들에게는 5세와 7세의 자녀들만 남게 되었다. 그 후 갑순이가 오빠내외의 재산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빠내외의 손해배상금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합의금조로 합계 약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하고 다른 재산은 없다. 그런데 금융기관의 갑순이 오빠명의 부채가 위 배상금 액수보다 훨씬 많아서 1억원 정도된다는 것이다. 그래서 갑순이는 어린 조카들에게 빚을 상속시킬 수는 없기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려고 한다. 그러나 뜻밖에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 갑순이의 올케언니, 수익자가 법정상속인, 보험금 1억원인 사망보험이 하나 가입되어 있었다. 이 경우에 갑순이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조카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.

부부가 같은 날 같은 일시에 사망하지 않은 이상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다가 사망한 것이 되어 두차례에 걸친 상속문제가 발생한다. 갑순이의 올케가 오빠보다 하루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올케의 재산을 1차적으로 갑순이의 두 조카들과 오빠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난 다음에, 2차적으로 두 조카들이 다시 오빠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하게 된다. 따라서, 올케가 피보험자가 된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들인 갑순이 오빠와 조카들이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수령할 권한이 있다.

따라서, 갑순이의 오빠 3, 조카들 각 2의 비율로 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게 되어 오빠가 42,857,142원, 조카 한 명당 각 28,571,428원씩을 수령할 권한이 있게 된다.

그 후 갑순이의 오빠를 피상속인으로 한 2차 상속의 경우에 법정상속인들은 갑순이의 조카들 둘이 1순위가 된다. 이 경우에 갑순이의 오빠는 그 처의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게 된 42,857,142원의 보험금과 자신의 채무 약 1억원이 존재한다. 그외에도 오빠내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대략 8천만원 정도가 존재한다고 한다.

그런데 갑순이 질문내용만으로는 이 중 얼마가 오빠의 몫이고 올케언니의 몫인지 구분이 안가나 이 경우에도 위 사망보험금과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. 예컨대, 올케언니 몫의 손해배상금은 갑순이의 오빠와 조카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1차 상속을 하게 된다. 그러므로 갑순이 오빠로서는 자신 몫의 손해배상금과 올케로부터 상속받은 액수가 자신의 재산으로 더 추가되는 셈이다. 그러나, 현재상황으로서는 그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.

그러므로, 갑순이의 오빠가 받을 위 손해배상금과 사망보험금 42,857,142원등의 재산합계금액이 갑순이 오빠의 채무액인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갑순이의 조카들은 상속재산포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.

그러나,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두렵다면 한정승인(피상속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)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.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들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통상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다. PPFK